

이기심을 버리자

임경수 / 대외협력팀 차장

얼

마 전 의약분업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은 집단파업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수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서 쓱겨나다시피 퇴원해야 했고, 응급 환자들도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다가 생명을 잃기도 하였다. 그러자 각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파업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의사협회의 행동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하여 현장조사 및 검찰고발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졌다.

사유는 다르지만 자금·자산 등에 대한 부당한 내부거래 조사를 시작했던 '98년 당시 대규모기업집단에 있어서도 혼란과 곤혹의 시기였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지침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조사였기에 그렇겠지만, IMF에 따른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유도했던 정부정책과 맞물려 기업 내부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맴돌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탓일까. Z그룹의 조사장 내부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조사관 앞의 자에 앉아 있던 김과장이 핏대를 곤두세우며 고조된 억양으로 조사관의 말을 받아쳤다.

“허조사관님!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이것은 거래행위에 있어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허조사관님의 일방적 판단 …”

김과장은 자신의 말꼬리를 흐리며 멈칫했다. 조사관이 불공정거래행위의 물증이라 할 수 있는 회계장부를 펼쳐 보이며 제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여직원이 그 물증의 회계장부를 가로챘다. 그리고는 곧장 조사장 밖으로 뛰쳐나갔다.

가뜩이나 무거운 조사장 공기가 김과장의 격앙된 언성에 더욱 사늘해졌고, 여직원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험악하다 못해 조사관과 회사측 관계자간 협용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 흘렀다.

얼마간 시간이 흘렀을까, 조사장은 다시 평온을 찾았다. 여직원은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누를 끼쳤다며 눈물을 글썽거렸고, 김과장도 자신의 과민반응을

책망했다. 허조사관 역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후회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98년도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조사는 끝이 났다. 관련 기업에게 사상 초유의 과징금 납부명령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에 반발한 기업들은 제각기 정당한 거래 형태임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이 줄줄이 이어졌다.

나 역시 '98년도 내부거래조사 당시 상당한 고민 속에 빠졌다. 밤잠을 설쳐가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때로는 직원들과 함께 모기에 물려가며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모범답안을 작성하느라고 밤새도록 땀 흘렸다.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Z그룹의 김과장이나 여직원이 행한 사실에 대해 이해가 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토록 하여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것은 당연한 직무이다.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포착한 행위에 대해 정당함을 입증하려고 기업이 노력하는 것 또한 당연했다. 때문에 조사에 입하는 양당사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 조사자는 어떻게 해서든 불공정거래행위를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기업은 이러한 조사에 대해 충분한 대응책을 강구했을 것이다.

거래활동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근원을 살펴보자. 먼저 사업활동 과정이나 주어진 환경상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의도적인 계획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분명 차이는 있다. 전자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킨 요소들을 제거하면 된다. 그러나 후자는 행위자의 혁신 없이는 치유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왔다.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의 의도적인 불공정거래행위는 어려워졌다. 계열기업간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를 두어 주주의 이익 보호와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가 하면, 감시자로서의 활동을 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눈이 있기에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지어는 집단간 아귀다툼이 끊이지 않고 활개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더군다나 새로운 제도들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한 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수많은 의견충돌이 일어나 혼돈의 사회를 만드는 근원은 어디서부터 치유해야 하는 것일까?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만은 그 변

LG정보통신(주)

화의 물결 속에 빨려가고 싶지 않은 것일까, 아니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보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옥쇄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기업은 사회의 구성요소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고용 창출은 물론 문화, 국가간산업 등 기업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우량기업이 많은 국가일수록 세계시장에서의 위치도 달라지듯 기업이 부실하면 국가의 존망마저 불투명해진다. 분명 기업은 사회의 선봉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첨병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기업인들은 자신이 설립했거나 최대주주라는 이유 하나로 기업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했다. 회사를 자신의 마음대로 사고 파는가 하면, 회사의 경제적 생성물인 이익을 자신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업은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업인은 기업을 통해 개인의 권력이나 명예, 부를 지켜주는 전유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성장시킬 능력이 없다면 경영권 사수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주주들과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도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의도적으로 경제사회를 유린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퇴출시켜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위해 모호한 제도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불합리하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이 땅에서 영원히 사장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기심이다. 최고의 경영능력을 보유한 자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한다면 그 사람이 오너이든 아니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경영권 수호에만 몰두하기 위하여 의도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발생시킨다든가 또는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제도만을 옹호하는 맹목적인 권위자의 행위 역시 이기심의 산물일 것이다.

얼마 전 모TV방송국에서 방영한 ‘허준’이란 드라마 내용 중 허준이 옥사로 끌려가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상대방의 언행에 답한 말이다. “정도(正道)를 가면 두려운 것이 없소이다”라는 대답이 떠오른다.

정도란 글자 그대로 ‘올바른 길’이다. 우리 모두 자신의 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한번쯤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보자. 혹시나 과(過)하지는 않았는지…, 무엇이 두려운가! **공정**

공정거래 관련 상담 Q & A

Q 아파트건축공사를 하도급함에 있어 공사대금 지급조건을 대물 70%로 하는 입찰에 의거하여 하도급했을 경우의 법위반 여부는?

A 하도급법(제17조)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대물변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입찰에 의거하여 대물변제를 수락하고 동 조건의 거래를 선택하였다면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음.

Q 하도급공사가 준공되고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발주자로부터 S/C를 적용받아 원사업자가 이를 하도급자에게 반영·지급코자 함에 있어 하도급자가 시공한 공사 이부에 하자가 발견되어 이의 하자보수 이행과 연계하여 S/C 반영을 유보할 수 있는지 여부는?

A 이미 준공된 공사에서의 하자보수 보증은 이 행증권으로 담보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S/C 반영은 별도의 사안이므로 하자를 이유로 S/C 지급을 유보할 수는 없음.

Q 선급금 지급기한(15일)에서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공제하고 있는데 이 공제기간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가?

A 지급보증서 제출에 소요된 기간 즉, 선급금 지급을 위한 지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한 날로부터 실제 제출된 날까지의 기간을 공제대상기간으로 함.

Q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주기 위해 수급사업자

에게 자급보증서 제출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신용이 없는 수급사업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선급금을 안 받아도 좋다고 말하는데 이때 원사업자는 어떻게 조처해야 하는지?

A 이런 경우라도 하더라도 원사업자에게는 선급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라는 독촉 공문을 보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함. 특히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근거문서는 후에 과실상계자료로 쓰어질 수 있음.

Q 소비자현상경품을 8월 1일부터 10월까지 실시하려고 함. 새로운 경품고시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8월부터 시작해 9월과 10월까지 이어지는 소비자현상경품행사는 기존 경품고시의 적용을 받게되는 것인지?

A 개정된 경품고시는 원래 2000년 6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업계에 대한 홍보기간과 이미 잡혀져 있는 업계의 판촉행사 유지를 위해 올 9월로 시행시기를 늦춘 것임. 따라서 아무리 행사시작이 8월부터라고 해도 9월에서 10월까지 이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새로이 개정된 고시가 적용됨. 따라서 소비자현상경품은 경품제공총액이 예상매출액의 1% 미만이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2000. 3. 29 개정).